변경대비표(일반및자펀드)

1. 대상 펀드:

no.	펀드명	클래스 신설	영업일 정의	투자 대상 자산	모펀드 투자 대상 자산	모펀드 투자 대상 자산 한도	결 산	변동성	변경 사항
1	미래에셋재팬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 1 호(주식-파생형)	Ο	0	-	주 2)	0	-	-	-
2	미래에셋개인연금스마트롱숏 30 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1	1	0	ı	-	0	0	8), 9), 10)
3	미래에셋개인연금아시아그레이트컨슈머증권전환형자투자신 탁 1 호(주식-재간접형)	-	ı	0	ı	-	0	0	10)
4	미래에셋개인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1 호(주식)	-	-	0	주 1)	-	0	0	10)
5	미래에셋글로벌배당과인컴증권자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_	-	0	-	-	0	0	-
6	미래에셋사랑나눔증권자투자신탁(주식)	_	-	0	-	-	0	0	10)
7	미래에셋인덱스플러스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1 호(주식)	-	-	0	-	-	0	0	10)
8	미래에셋장기성장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 3 호(주식)	-	-	0	-	-	0	0	10)
9	미래에셋퇴직플랜농산물안정형증권자투자신탁(채권혼합)	-	-	0	-	-	0	0	10)
10	미래에셋퇴직플랜원자재안정형증권자투자신탁(채권혼합)	-	-	0	-	-	0	0	-
11	미래에셋개인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1 호(주식혼합)	-	-	-	주 1)	-	-	-	-
12	미래에셋디스커버리한아름증권자투자회사(채권혼합)	-	i	-	주 1)	-	-	-	-
13	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 2030 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1 호(주식)		-	1	주 1)	-	-	-	-
14	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 2030 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1 호(주식)	=.	-	-	주 1)	-	-	-	
15	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 3040 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1 호(주식혼합)	-	-	-	주 1)	-	-	-	-
16	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 3040 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1 호(주식 혼합)	-	-	-	주 1)	-	-	-	-
17	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 4050 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1 호(주식혼합)	-	-	-	주 1)	-	-	-	-
18	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 4050 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1 호(주식 혼합)	-	-	-	주 1)	-	-	-	-
19	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 5060 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-	-	-	주 1)	-	-	-	-
20	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 5060 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1 호(채권 혼합)	-	-	-	주 1)	-	-	-	-
21	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 6070 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-	-	-	주 1)	-	-	-	-
22	미래에셋목돈관리목표전환형증권자투자신탁 4 호(채권)	-	-	-	주 1)	-	-	-	-
23	미래에셋목돈관리목표전환형증권자투자신탁 5 호(채권)	-	-	-	주 1)	-	-	-	-

no.	펀드명	클래스 신설	영업일 정의	투자 대상 자산	모펀드 투자 대상 자산	모펀드 투자 대상 자산 한도	결 산	변 동 성	변경 사항
24	미래에셋아내사랑글로벌이머징증권자투자신탁 1 호(주식)	-	-	-	주 1)	-	0	0	-
25	미래에셋장기주택마련증권자투자신탁 1 호(주식)	-	-	-	주 1)	-	-	-	-
26	미래에셋퇴직플랜선진시장안정형 40 증권자투자신탁(채권혼합)	-	-	-	주 2)	0	0	0	-
27	미래에셋연금선진시장증권자투자신탁 1 호(주식-재간접형)	-	-	-	주 2)	0	0	0	10)
28	미래에셋 FINEMMF1 호(국공채)	-	-	-	-	-	0	0	10)
29	미래에셋 MSCIAC 월드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(주식)(UH)	-	-	-	-	-	0	0	10)
30	미래에셋개인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 1 호(채권)	-	ī	-	-	-	0	0	-
31	미래에셋달러단기자금증권자투자신탁(USD)(채권)	-	-	-	-	-	0	0	-
32	미래에셋디스커버리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 1 호(주식)	-	-	-	-	-	0	0	-
33	미래에셋라틴인덱스증권투자신탁 1 호(주식)	-	-	-	-	-	0	0	-
34	미래에셋배당과인컴 30 성과보수증권자투자신탁(채권혼합)	-	-	-	-	-	0	0	10)
35	미래에셋밸런스알파플러스성과보수증권자투자신탁(채권혼합)	-	-	-	-	-	0	0	10)
36	미래에셋밸런스알파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(채권혼합)	-	ı	-	ı	-	0	0	10)
37	미래에셋소득공제장기가치주포커스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1 호(주식)	-	-	-	-	-	0	0	-
38	미래에셋소득공제장기스마트롱숏 70 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1 호(주식)	-	-	-	-	-	0	0	-
39	미래에셋아시아그로스증권자투자신탁(H)(주식-재간접형)	-	-	-	-	-	0	0	10)
40	미래에셋연금러시아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 1 호(주식)	-	-	-	-	-	0	0	-
41	미래에셋연금차이나인프라증권자투자신탁 1 호(주식)	-	-	-	-	-	Ο	0	-
42	미래에셋차이나 H 레버리지 1.5 증권투자신탁(주식- 파생재간접형)	-	-	-	-	-	0	0	-
43	미래에셋하나 1Q 개인연금증권자투자신탁 1 호(주식혼합- 재간접형)	-	-	=	-	-	0	0	-

2. 변경 사항:

- 1) 클래스 신설
- 2) 영업일 정의 변경
- 3) 투자대상자산 추가
- 4) 모투자신탁 투자대상자산 추가
- 5) 모투자신탁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변경
- 6) 펀드 결산에 따른 재무정보 및 주요 수치 업데이트
- 7) 투자위험등급 관련 변동성 값 등 업데이트
- 8) 고난도 관련 문구 반영
- 9) 법 개정사항 반영
- 10) 이해관계인 삭제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명 변경
- 3. 효력발생예정일: 2023년 07월 14일 (금)

4. 변경 내용:

1) 클래스 신설

[집합투자규약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3조(집합투자기	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	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
구의 종류 및 명칭	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	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등)	<신설>	[아래 참조1]
제10조(수익증권		
의 발행 및 전자등	<u><신설></u>	[아래 참조 1]
록)		
제37조(보수)	<신설>	[아래 참조 1]
		<u> </u>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요약정보	<신설>	[아래 참조 1]
환매수수료		
제1부. 1. 집합투		
자기구의 명칭		
제2부. 1. 집합투		
자기구의 명칭		
제 2 부. 6. 집합투		
자기구의 구조		
[종류형 구조]		
제2부. 11. 매입,		
환매 및 기준가격		
적용		
제 2 부. 13. 보수		
및 수수료에 관한		
사항		
가. 투자자에게 직		
접 부과되는 수수		
료		
나. 집합투자기구		
에 부과되는 보수		
및 비용		

[참조1]

구분 가입자격	판매보수(%)	선취	환매
---------	---------	----	----

			판매	수수료
			수수료	
~ = c po	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,	0.64	해당사항	해당사항
<u>종류 C-P2</u>	<u>퇴직연금사업자</u>	0.64	<u>없음</u>	<u>없음</u>
~= c pa	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,	0.33	해당사항	해당사항
<u>종류 C-P2e</u>	퇴직연금사업자 중 온라인 가입자	<u>0.32</u>	<u>없음</u>	<u>없음</u>

2) 영업일 정의 변경

[집합투자규약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2조 (용어의 정	9. 다만, 매년 1월 2일, 1월 3일, 5월 3일,	<u><삭제></u>
의)	5 월 4 일, 5 월 5 일은 제 2 호의 영업일에 포	
	함하지 아니한다.	

3) 투자대상자산 추가

[집합투자규약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 15 조(투자대상	②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	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
자산 등)	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	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
	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	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
	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.	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.
	1. ~2. <생략>	1. ~2. <생략>
	3. <신설>	3. 환매조건부매수(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
		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
		한다.)
	②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	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
	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	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
	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	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
	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.	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.
	1. ~2. <생략>	1. ~2. <생략>
	3. <신설>	3. 환매조건부매수(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
		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
		한다.)
	4. 제 1 호 및 제 2 호 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	4. 제1호 <u>내지 제3호</u> 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 2 부. 8. 가.	[단기대출 주 1),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 2) <u>, <</u>	[단기대출 주1),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2), 환
투자대상	<u>신설></u>]	매조건부매수]

<생략>	<생략>
<신설>	※주) 환매조건부매수는 증권을 일정기간
	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
	을 말함.
[단기대출 주 1),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 2) <u>, <</u>	[단기대출 주1),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2), 환
신설> 및 이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]	<u>매조건부매수</u> 및 이에 준하는 외화표시자
<생략>	산]
<신설>	<생략>
	※주) 환매조건부매수는 증권을 일정기간
	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
	<u>을 말함.</u>

4) 모투자신탁 투자대상자산 추가

주1)

미래에셋마에스트로	미래에셋마에스트로증권모투자신탁(주식)				
항목	변경 전	변경 후			
[제2부 별첨1] 모집	[단기대출 주 1),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 2) , <신	[단기대출 주1),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2), 환매			
합투자기구에 관한	<u>설></u> 및 이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]	조건부매수 및 이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]			
사항 1. 나. (1) 투자	<생략>	<생략>			
대상	<신설>	※주) 환매조건부매수는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			
		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함.			

주2)

미래에셋재팬인덱스	미래에셋재팬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					
항목	변경 전	변경 후				
[제2부 별첨1] 모집	[단기대출 주 1),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 2) , <신	[단기대출 주1),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2), 환매				
합투자기구에 관한	<u>설></u> 및 이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]	조건부매수 및 이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]				
사항 1. 나. (1) 투자	<생략>	<생략>				
대상	<신설>	※주) 환매조건부매수는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				
		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함.				

5) 모투자신탁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변경

미래에셋재팬인덱스	미래에셋재팬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		
항목	변경 전	변경 후	
[제2부 별첨1] 모집	[장내파생상품]	[장내파생상품]	
합투자기구에 관한	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	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	
사항 1. 나. (1) 투자	파생상품으로서 주식・채권・통화나 주식・	파생상품으로서 주식・채권・통화나 주식・	
대상	채권ㆍ통화의 가격, 이자율, 지표, 단위 또는 이	채권・통화의 가격, 이자율, 지표, 단위 또는 이	
	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	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	
	((장외파생상품을 포함하여) 위험평가액 기준	((장외파생상품을 포함하여) 위험평가액 기준	
	10% 초과)	40% 이하)	

[장외파생상품]

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외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외 파생상품으로서 통화나 통화의 가격, 지표, 단파생상품으로서 통화나 통화의 가격, 지표, 단 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(다만, 위험회피목적의 거래에 한한다.) |((장내파생상품을 포함하여)위험평가액 기준 ((장내파생상품을 포함하여)위험평가액 기준 10% 초과)

[장외파생상품]

것(다만, 위험회피목적의 거래에 한한다.) 40% 이하)

6) 펀드 결산에 따른 재무정보 및 주요 수치 업데이트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요약정보<투자비용		총보수· 비용(피투자집합투자
>	Ξ	<u>기구 보수포함) 업데이트</u>
제 2 부. 13.		* b く u g / u E T N か E T フ コ は く u か い
보수 및 수수료에	<u> </u>	총보수·비용(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포함)
관한 사항		및 증권거래비용 등 업데이트
제 3 부.		
집합투자기구의 재		게무정보 및 조이 스킨 어테이트
무 및 운용실적 등	<u> -</u>	재무정보 및 주요 수치 업데이트
에 관한 사항		
제 5 부. 4. 가.		
이해관계인과의 거	<u>=</u>	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업데이트
래내역		

7) 투자위험등급 관련 변동성 값 등 업데이트

펀드명	변경 전 등급	변경 후 등급	변경 전(%)	변경 후(%)
미래에셋FINEMMF1호(국공채)	6	6	0.05	<u>0.14</u>
미래에셋MSCIAC월드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(주식)(UH)	<u>2</u>	<u>3</u>	17.61	13.24
미래에셋개인연금스마트롱숏3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5	5	2.08	<u>1.79</u>
미래에셋개인연금아시아그레이트컨슈머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(주식- 재간접형)	2	2	<u>15.66</u>	<u>17.73</u>
미래에셋개인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(주식)	2	2	<u>23.16</u>	<u>17.28</u>
미래에셋개인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1호(채권)	<u>5</u>	4	4.37	5.55
미래에셋글로벌배당과인컴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4	4	7.42	<u>5.35</u>
미래에셋달러단기자금증권자투자신탁(USD)(채권)	5	5	0.6	0.55
미래에셋디스커버리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)	2	2	22.91	<u>17.6</u>
미래에셋라틴인덱스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	1	1	32.65	26.51
미래에셋배당과인컴30성과보수증권자투자신탁(채권혼합)	4	4	<u>7.63</u>	<u>5.65</u>
미래에셋밸런스알파플러스성과보수증권자투자신탁(채권혼합)	5	5	<u>4.51</u>	3.63
미래에셋밸런스알파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(채권혼합)	5	5	<u>4.51</u>	3.62
미래에셋사랑나눔증권자투자신탁(주식)	2	2	23.41	<u>17.66</u>
미래에셋소득공제장기가치주포커스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(주식)	1	<u>2</u>	27.93	<u>19.13</u>

미래에셋소득공제장기스마트롱숏7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(주식)	4	4	6.02	5.54
미래에셋아내사랑글로벌이머징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)	<u>2</u>	<u>3</u>	18.47	14.27
미래에셋아시아그로스증권자투자신탁(H)(주식-재간접형)	2	2	19.44	17.99
미래에셋연금러시아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)	1	1	52.43	52.06
미래에셋연금선진시장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-재간접형)	<u>2</u>	<u>3</u>	19.74	<u>14.16</u>
미래에셋연금차이나인프라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)	2	2	20.62	<u>19.94</u>
미래에셋인덱스플러스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(주식)	2	2	23.43	<u>17.75</u>
미래에셋장기성장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3호(주식)	2	2	23.73	19.09
미래에셋차이나H레버리지1.5증권투자신탁(주식-파생재간접형)	1	1	33.22	34.83
미래에셋퇴직플랜농산물안정형증권자투자신탁(채권혼합)	5	5	3.73	4.79
미래에셋퇴직플랜선진시장안정형40증권자투자신탁(채권혼합)	4	4	7.13	6.01
미래에셋퇴직플랜원자재안정형증권자투자신탁(채권혼합)	5	5	<u>4.14</u>	4.97
미래에셋하나1Q개인연금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혼합-재간접형)	4	4	8.29	<u>6.13</u>

8) 고난도 관련 문구 반영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2조(용어의 정의)	<신설>	- "고난도금융투자상품"이라 함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의한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.
제53조(고난도금융 투자상품)	<u><신설></u>	이 투자신탁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서 정하고 있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아니한다.

9) 법 개정사항 반영

[집합투자규약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13조(자산운용지	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 1 항에	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
시 등)	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처분 등을 한	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처분 등을 한 경
	경우 <u>투자신탁재산으로</u> 그 이행책임을	우 그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 그 이행
	부담한다. 다만,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	책임을 부담한다. 다만, 그 집합투자업자가
	제 64 조제 1 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	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
	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제15조(투자대상자	-채권	<삭제>
산 등)	<중략>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	
	<생략>	
	-자산유동화증권	
	<중략>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	
	<생략>	

제17조(운용 및 투	2. <생략>	2. <생략>
자 제한)	나. <중략> <mark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</mark>	나. <삭제>
	<u>또는</u>	
	<중략> <mark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</mark>	
	<u>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</u> , <생략>	
제42조(집합투자업	①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	①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법을 위반하
자 및 신탁업자의	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	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투자신탁재산에
변경)	쳐야 한다.	손실을 초래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수익자
		총회 결의를 거쳐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
		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.
	②~③ <생략>	②~③ <생략>
	<신설>	④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제 1 항 외의 사유로
		수익자 총회 결의를 얻어 이 투자신탁의
		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.
		다만, 정당한 사유없이 집합투자업자나
		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나
		신탁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 한도 내에서
		그로 인한 손실의 보상 또는 손해의 배상을
		<u>청구할 수 있다.</u>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2부. 8. 가. 투자	-채권	<삭제>
대상	<중략>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	
	<생략>	
	-자산유동화증권	
	<중략>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	
	<생략>	
제2부 8. 나. 투자	-동일종목투자 (예외)	-동일종목투자 (예외)
제한	다만, 다음의 경우에는 각 항목에서 정하는	다만, 다음의 경우에는 각 항목에서 정하는
	바에 따라 10%를 초과하여 동일종목	바에 따라 10%를 초과하여 동일종목
	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.	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.
	나. <중략>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</u>	나. <삭제>
	<중략> <mark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</mark>	
	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, <생략>	

10) 이해관계인 삭제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명 변경

[투자설명서]

하모	변경 저	비 겨 승
87	건경 전	건경 주

제4부. 1. 가.	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 중 집합투자업자의	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 중 집합투자업자의
회사의 개요	주요 이해관계인 현황	주요 이해관계인 현황
	- 일반사무관리회사 : 미래에셋펀드서비스	<삭제>
	- 신탁업자 : 국민은행	
제4부. 4.	회사명: 미래에셋펀드서비스 ㈜	회사명: 한국펀드파트너스 ㈜
일반사무관리회사		
에 관한 사항		

^{*}상기 변경사항에 대한 집합투자규약 및 정관 조항 번호는 펀드 별로 상이할 수 있으나, 변경 내용은 동일함

미래에셋자산운용㈜